

서울특별시 삼청각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621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17년 2월 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삼청각은 서울시민과 외국관광객을 위한 전통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2014년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매년 14만여명의 내·외국인이 찾는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서
- 나. 삼청각 활성화 방안을 효율적,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 민간기관(업체)를 활용하여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삼청각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사관로 3(성북동 330-115외 3필지)
- 시설규모 : 부지 20,115m², 연면적 4,399m²

나.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3년(2018.4.1.~2021.3.31.)
- 위탁사무
 - 문화사업 : 전통문화, 한식 조리·시식체험 프로그램, 이벤트 등 운영
 - 식음료 및 주차장 운영사업 : 한식당, 연회, 주차장 등 운영
 - 시설 유지관리사업 : 조경, 시설물, 비품, 장비 등
 - 기타 시설운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위탁기관의 요구사항 등
- 위탁유형 : 수익창출형 위탁(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징수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
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3
- 민간위탁 추진현황
 - 1차 최초위탁 : 2001.10~2005.6.30(3년9월) (재)세종문화회관
 - 2차 재계약 : 2005.7.1~2009.6.30(4년) (주)파라다이스
 - 3차 재계약 : 2009.7.1~2011.6.30(2년) (재)세종문화회관

- 4차 재계약 : 2011.7.1~2013.6.30(2년) (재)세종문화회관
- 5차 재계약 : 2013.7.1~2015.9.30(2년3월) (재)세종문화회관
- 6차 재계약 : 2015.10.1~2017.3.31(1년6월) (재)세종문화회관
- 7차 재계약 : 2017.4.1~2018.3.31.(1년) (재)세종문화회관

라. 민간위탁의 필요성

- 삼청각은 서울시민과 외국관광객을 위한 전통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매년 14만 여명의 내·외국인이 찾는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서,
- 전통공간에서의 한국음식, 문화예술공연, 한옥시설 관리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인력과 운영노하우를 가진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4조의3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 위탁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※ 작성자 : 박물관과 박물관정책팀 김현강(2133-4184)